

의안검토보고

1. 발의 또는 제출자 : 대전광역시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건요지 : 별 첨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점과 같이 보고합니다.

1995년 12월 일

내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준 봉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995년 12월 일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1995. 12. 15 대전광역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 12. 16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세제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유료노인복지시설과 영구임대주택 및 아파트형공장에 대하여

세제지원하고자 하며, 싼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와 개인간의 거래시 작성되는 검인계약서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율을 축소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국가유공자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상이급수 1~5급에서 1~6급으로 확대하고자 함. (안 제2조)

나. 장애인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 대상을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에서 정신지체, 언어, 청각장애인까지 확대하고자 함. (안 제4조)

다.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자 함. (안 제6조의2)

- 라. 싼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평균 34%수준 감면에서 평균 28%수준 감면으로 감면율을 축소하고자 함. (안 제14조)
- 마.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의 영구임대주택과 그 복리시설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자 함. (안 제16조)
- 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개인간의 거래시 작성되는 검인계약서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20”으로 축소하고자 함. (안 제21조)
- 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하고자 함. (안 제22조의2)

3. 검토의견

- 본 안건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세제감면범위를 확대하고, 유료노인복지시설과 영구임대주택 및 아파트형공장에 세제지원하고자 하며, 싼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와 개인간의 거래시 작성되는 검인계약서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률 축소하고자 하는 내용임.
- 현행 시세감면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국가유공자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상이급수 1~5급

에서 1~6급으로 확대하여 1~5급은 현행대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가 면제되며 6급에 해당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면제토록 하였으며 (안 제2조)

둘째, 장애인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 대상을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에서 정신지체, 언어, 청각장애인까지 확대하였음.
(안 제4조)

셋째,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취득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하였고 (안 제6조의2)

넷째, 싼형자동차의 자동차세를 평균 34%수준 감면에서 평균 28%수준 감면으로 감면율을 축소하였음. (안 제14조)

다섯째,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의 영구임대주택과 그 복리시설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토록 하였으며 (안 제16조)

여섯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개인간의 거래시 작성되는 검인계약서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20”으로 축소하였고 (안 제21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음. (안 제22조의2)

- 이상과 같이 동 시세감면조례 개정내용을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의 생업활동을 보다 더 지원하는 차원에서 자동차

세 과세면제를 확대하였고, 유료노인복지시설 설치지원과 영세서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건설 및 중소기업보호육성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 건축지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주된 내용이 되겠으며, 반면에 싼형자동차세 감면율을 현행보다 평균 6% 수준으로 축소하여

비영업용 싼형 3,000cc 기준으로 볼때 자동차 년세액이 현행 600,000원에서 690,0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부동산등기 특별

조치법에 의한 개인간의 매매거래시 작성되는 검인계약서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율이 현행보다 10퍼센트 축소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으로 동 조례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